

의안번호	제 29/ 호
의결년월일	1995. 7. 31. (제 35 회)

의결 사항	의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5. 7. 15.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4647호) 제21조(정원의규정)에 의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되어 있고
-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 인구 15만 미만의 지방자치 부단체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(4급)에서 국가직 서기관으로 정원배정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 코자 함.
-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및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 추진을 위해서 유사한 업무를 통합하고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함께 규정토록 함 : 13명
- 지방서기관(부군수) 정원 감축 : 1명
- ※ 참고자료 : 지방12200~925(95.6.28) 지방직 부군수 정원 감축 승인
- 본청직원 1명을 감하여 사업소에 1명 증원

3. 대통령령 제14627호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4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정원의 총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
1. 본청 : 230명
2. 의회사무기구 : 13명
3. 직속기관 : 92명
4. 사업소 : 18명
5. 읍면 : 288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— 72 —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기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본청 : 232명</p> <p>2. 직속기관 : 92명</p> <p>3. 사업소 : 17명</p> <p>4. 읍면 : 288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현행과 같음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본청 : 230명</p> <p>2. 의회사무기구 : 13명</p> <p>3. 직속기관 : 92명</p> <p>4. 사업소 : 18명</p> <p>5. 읍면 : 288명</p>